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44

발의연월일: 2022. 8. 12.

발 의 자:배준영·조명희·박대수

윤창현 • 최춘식 • 최재형

이태규 · 강대식 · 김예지

김영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특례를 두어 내국인이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이하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벤처기업등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창업및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등).

주요내용

다음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함.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안제13조제1항 및 제4항).
- 나.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 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3조의2제1 항).
- 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 함으로써 공동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 을 법인세에서 공제 등(안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
-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안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
- 마.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 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안 제14조제7항 및 제8항).
- 바.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 세,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안 제15조제1항).

사.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안 제16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아 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과세) ①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 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 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 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 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 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u>2025년 12월 31일</u>
3.	
J.	
	<u>2025년 12월 31일</u>

가. ~ 마. (생 략)

-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 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 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 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

가. ~ 마. (현행과 같음)
4
2025년 12월 31일
_
5
<u>2025년 12월 31일</u>
<u>202</u> 3色 12
6
· ·

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 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 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 는 출자지분

②·③ (생 략)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저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

<u>2025년 12월 31일</u>
<u>202</u> 5인 12
②·③ (현행과 같음)
4
<u>2025</u>
년 12월 31일
· ⑤ (현행과 같음)
세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u>2025년 12월 31일</u>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 ~ ⑤ (생 략)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 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 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 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 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 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 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 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 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

·
<u>.</u>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
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 1 에 네인 커/에그데/ ①
2025년 12월 31일

제한다.

- 1. ~ 3. (생략)
- ② (생 략)
-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 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 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 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외국법 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 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 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 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 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 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 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③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u>20</u> 25년 12월 31일	
<u>20</u> 25년 12월 31일	
<u>25년 12월 31일</u>	
	<u>20</u>
	25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 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 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 는 사업 · 자산의 양수가액(이 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 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④ ~ ⑧ (생 략)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 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
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과세) 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 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 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 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주식등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 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 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 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1
<u>2025</u>
년 12월 31일
2
2025
<u> </u>
<u>: 12 e 01 e</u>
3

투자대상기업에 <u>2022년 12월</u> <u>31일</u>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 한 주식등

- ② (생략)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 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 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 ④ (생 략)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8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 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u>2025년 12</u>	2
<u>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	-)	
③		
		-
<u>20</u>)25년 12월 31	
<u>일</u>		
		-
 (청체기 가 O	1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기업		
대한 과세특례)		
과 같음)		
⑦		
<u>2025년 12월</u>	31일	
		-
8		-
		-
		-
		-
<u>2025년</u> 1	 2월 31일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저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 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 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 세 · 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 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 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 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하다.

1. • 2. (생략)

② ~ ④ (생 략)

세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u>2025년 1</u>
2월 31일
<u>2025년 12월 31일</u>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 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 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 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 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 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 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 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제16소(벤저투자소합 술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2025년 12월 31일

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 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